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VaR값과 투자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5년 12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12월 23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17년 3월 13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BM781)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VaR 값과 투자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자본수익전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 각 전략의 모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되며 금융시장 상황, 시장 전망 및 펀드내 가치변동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략별, 전략내 모펀드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82	0.48	-	0.99	101	207	319	556	1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58	0.24	-	0.75	76	157	241	421	9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0.74	0.4	-	0.91	93	191	293	511	11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0.54	0.2	-	0.71	72	149	228	399	8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O)	-	0.46	0.12	-	0.63	49	100	154	269	59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6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150% 로 추정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12.01~ 25.11.30	23.12.01~ 25.11.30	22.12.01~ 25.11.30	20.12.01~ 25.11.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17.09.29	9.46	10.08	7.36	4.34	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7.06.23	9.23	9.83	7.11	4.08	4.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17.03.31	9.28	9.89	7.17	4.15	4.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O)	2022.12.06	9.52	10.14	7.25	-	7.25
투자신탁	2017.03.13	10.01	10.63	7.92	4.89	5.17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4.76	4.47	4.35	4.76	5.15

(주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혼합자산)(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정욱	1980	본부장	13개	47,920억원	13.23	14.30	14.00	14.36	10년6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

투자자 유의사항	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상기 외 자펀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원/미국달러(USD)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보유자산 중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7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자펀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

(HK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원/미국달러(USD)에 대해서 7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 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대해 90% 이상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
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매입방법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C-I, F, C-P, C-Pe, C-P2, C-P2e, C-P2K, O, C-P2I]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과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7년 3월 13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5년 12월 23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21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전신탁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BM781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BM681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BM79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BM798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M80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M80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U545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1276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73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K08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2017년 3월 13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BM781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BM681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BM79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BM798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BM80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M80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BU545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1276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73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K08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7.03.13	최초 설정
2017.08.06	투자신탁 명칭변경(舊 미래에셋연금의품격혼합자산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삭제(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종류C-P2e 신설
2018.01.12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삭제(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명칭변경(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9.01.13	투자신탁 명칭 변경(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19.06.05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삭제(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20.01.29	종류 C-P2K 신설
2021.06.15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ESG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삭제(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5.31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022.07.15	투자전략 문구 추가
2022.08.12	종류O 신설
2022.12.27	종류O 보수 인하
2023.07.28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삭제(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4.02.22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삭제(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4.06.12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10영업일) → 제8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9영업일))
2024.10.11	모투자신탁 명칭변경(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4.11	종류 C-P2I 신설
2025.04.22	보수 정정(2025년 04월 11일 자 효력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5년 04월 11일부터 2025년 04월 21일까지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연 1000분의 2.0이 아닌 연 1000분의 0.2로 소급 적용)
2025.06.17	모투자신탁 추가(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김정욱	1980	본부장	10년6개월	(08년~1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 (1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정욱	13개	47,920억원	13.23	14.30	14.00	14.36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진하	1974	본부장	25년11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진하	9개	28,052억원	6.01	7.03	6.60	6.83	-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고영서	1985	팀장	16년5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서	9개	16,794억원	1.18	4.16	0.58	4.22	-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서재춘	1970	대표	24년5개월	(99년~99년) 하나은행 채권운용 (99년~01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0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재춘	16개	26,919억원	0.15	4.10	0.58	4.22	-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박현수	1990	선임매니저	9년11개월	(16년~17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17년~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리서치팀 (18년~20년) 하나UBS자산운용 리서치팀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현수	5개	980억원	-	-	14.18	8.95	-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신광호	1983	팀장	6년5개월	(09년~10년)삼성생명/법인지원팀 법인상품P (10년~19년)윌리스타워스왓슨코리아투자자문/Investment Consulting (19년~현재)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광호	3개	201억원	4.27	4.40	15.72	18.66	-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3년2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2,165억원	43.83	20.45	30.74	14.51	-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3년2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김진하	1974	본부장	25년11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고영서	1985	팀장	16년5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2,165억원	3.97	7.46	8.01	12.10	-	-
김진하	9개	28,052억원	3.97	7.46			-	-
고영서	9개	16,794억원	3.97	7.46			-	-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3년2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2,165억원	12.82	14.25	16.51	16.32	-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성수	1983	본부장	7년5개월	(04년~06년) EON Group/Consultant (08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국제본부 국제마케팅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2본부 리스크관리팀 (12년~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18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부동산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성수	1개	3,157억원	3.08	6.04	10.47	7.96	-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정희석	1985	팀장	11년8개월	(13년~14년) 한화생명보험 상품 개발 (14년~15년) 한화생명보험 채권 운용 (1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김윤정	1974	팀장	14년8개월	(99년~03년) NH투자증권 리서치팀 (03년~07년) 동부증권 리서치팀 (07년~11년)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 (11년~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희석	18개	18,690억원	19.72	26.27	15.72	18.66	-	-
김윤정	14개	9,354억원	19.27	21.56			-	-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정도옥	1987	팀장	13년3개월	(12년~15년) Ingensoma Arbitrage Ltd. / 선물옵션운용 (15년~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 선물옵션운용2팀 (17년~21년) 국민연금공단 / 패시브투자팀(패시브포트폴리오 운용) (2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도옥	3개	4,415억원	22.08	21.79	21.61	20.76	-	-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윤정	1974	팀장	14년8개월	(99년~03년) NH투자증권 리서치팀 (03년~07년) 동부증권 리서치팀 (07년~11년)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 (11년~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윤정	14개	9,354억원	73.04	32.15	51.67	24.58	-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진하	1974	본부장	25년11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유의형	1984	본부장	9년5개월	(10년~14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14년~16년)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진하	9개	28,052억원	20.95	24.07	16.51	16.32	-	-
유의형	10개	10,805억원	20.95	24.07			-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명준	1984	본부장	17년0개월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명준	23개	15,863억원	23.43	21.38	27.35	26.34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권혁범	1989	팀장	10년7개월	(1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혁범	5개	2,752억원	46.73	24.11	58.73	24.69	2개	401억원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명준	1984	본부장	17년0개월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명준	23개	15,863억원	23.43	21.38	27.35	26.34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ESG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은 5년 7개월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지운	1974	본부장	25년 2개월	(00년~01년) 삼성증권 (01년~06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06년~16년)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직접팀, 국내주식위탁팀, 해외증권실 해외주식직접팀 (16년~24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지운	14개	27,280억원	8.77	17.06	15.72	18.66	-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신재훈	1975	본부장	16년3개월	(02년~05년) SK증권 투자신탁팀 (05년~07년) AIG생명 투자운용부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운용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김명준	1984	본부장	17년0개월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파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재훈	16개	66,772억원	-1.39	-0.82	23.55	20.05	3개	5,592억원
김명준	23개	15,863억원	15.25	12.06			-	-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손재현	1980	본부장	7년8개월	(08년~17년) 미래에셋대우증권 글로벌투자정보팀 등 (17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손재현	1개	276억원	4.18	5.42	6.60	6.83	-	-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주종륜	1980	본부장	15년1개월	(07년~08년) 미래에셋증권 (08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 (15년~15년) Allard Partners (16년~19년) Briarwood Chase Management (19년~20년) D&H투자자문 (20년~20년) 유니스토리투자자문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주종륜	3개	1,318억원	29.68	21.14	27.35	26.34	1개	36억원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박상헌	1991	선임매니저	4년9개월	(16년~17년) 에프앤자산평가 (17년~19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19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상헌	1개	276억원	4.18	5.42	6.60	6.83	-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정대진	1980	본부장	18년2개월	(07년~10년)삼성투신운용 퀀트전략팀 (10년~12년)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Quant전략팀 (12년~현재)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대진	7개	6,223억원	24.57	30.12	27.35	26.34	-	-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용하	1992	매니저	5년11개월	(20년~22년) 삼성생명 유가증권운용부 (22년~2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용하	1개	464억원	73.04	32.15	51.67	24.58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구본원	1996	매니저	4년4개월	(2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구본원	7개	3,444억원	60.42	26.86	58.73	24.69	3개	584억원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승범	1980	본부장	16년9개월	(08년~12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12년~13년) Franklin Templeton(London) 채권운용 (13년~14년) Ashmore Group 채권운용 (14년~16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팀 (1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승범	12개	8,696억원	4.27	4.40	15.72	18.66	-	-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민태	1991	매니저	1년11개월	(17년~20년) 디앤에이치투자자문 (20년~21년) 노무라증권 (21년~21년) StartSeed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민태	3개	1,318억원	29.68	21.14	27.35	26.34	1개	36억원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양성종	1994	매니저	0년9개월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5.11.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양성종	3개	9,921억원	43.83	20.45	30.74	14.51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10.28 ~ 2011.04.18	송태우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1.04.19 ~ 2013.04.11	조일웅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3.04.12 ~ 2018.08.20	이현진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8.08.21 ~ 2020.08.12	김지열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0.08.13 ~ 2023.08.10	김지열(책임), 권혁범(부책임)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3.08.11 ~ 현재	권혁범(책임), 구본원(부책임)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2.03.05 ~ 2019.06.04	이현경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9.06.05 ~ 2025.03.13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3.14 ~ 현재	이현경(책임), 양성종(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 ~ 2010.10.24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 ~ 2011.05.24	허준혁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1.05.25 ~ 현재	김진하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6 ~ 2010.08.30	서재춘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08.31 ~ 2013.06.13	한상경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3.06.14 ~ 2025.05.15	서재춘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5.05.16 ~ 현재	고영서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09.03.02 ~ 2009.11.04	이헌복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09.11.05 ~ 2010.02.15	박진호, 이헌복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0.02.16 ~ 2011.04.18	목대균, 박진호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04.19 ~ 2011.08.30	박진호,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08.31 ~ 2011.11.10	김진하, 박진호, 안선영, 한상경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1.11.11 ~ 2013.06.13	구용덕, 김진하, 안선영, 한상경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3.06.14 ~ 2014.05.18	구용덕, 김진하,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4.05.19 ~ 2014.12.29	구용덕, 김진하, 목대균,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4.12.30 ~ 2016.10.31	김진하, 목대균, 안선영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6.11.01 ~ 2020.07.29	김진하, 목대균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0.07.30 ~ 2020.10.29	김진하(책임), 목대균(책임), 유의형(부책임)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0.10.30 ~ 현재	김진하, 유의형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1.05 ~ 2012.06.19	김진하, 장원영,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6.20 ~ 2015.06.21	김진하, 박건형,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5.06.22 ~ 2016.01.28	김진하, 이헌복,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01.29 ~ 2016.12.01	김진하, 홍사욱, 황영진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12.02 ~ 2022.02.09	김진하, 이현경,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02.10 ~ 현재	고영서, 김진하, 이현경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5.02.15 ~ 2019.06.04	이헌복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9.06.05 ~ 2021.05.31	김윤정, 최성민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21.06.01 ~ 현재	김윤정, 정희석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016.09.23 ~ 2016.10.31	김명준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016.11.01 ~ 현재	김명준, 신재훈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6.09.23 ~ 2023.04.13	김형우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3.04.14 ~ 2025.10.23	김윤정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5.10.24 ~ 현재	김윤정(책임), 김용하(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7.03.10 ~ 2019.07.23	박헌석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9.07.24 ~ 2020.05.28	홍성범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0.05.29 ~ 2022.06.29	홍성범(책임), 이규상(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06.30 ~ 2022.10.13	이규상(책임), 홍성범(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10.14 ~ 2024.07.09	최주훈(책임), 홍성범(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4.07.10 ~ 2025.12.22	최주훈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5.12.23 ~ 현재	박현수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17.08.11 ~ 2018.07.26	이상훈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18.07.27 ~ 현재	김성수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1.06.01 ~ 2025.01.23	신광호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1.24 ~ 현재	신광호(책임), 김승범(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2.06.08 ~ 2024.06.27	이주희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4.06.28 ~ 2024.10.10	이주연(부책임), 이지운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4.10.11 ~ 현재	이지운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2.08.01 ~ 2024.02.21	박경륜(책임), 주종륜(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2.22 ~ 현재	주종륜(책임), 김민태(부책임)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2.08.24 ~ 2023.04.13	김형우(책임)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3.04.14 ~ 2025.06.16	김정욱(책임), 정도옥(부책임)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5.06.17 ~ 현재	정도옥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3.07.28 ~ 2024.12.17	임형균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4.12.18 ~ 현재	손재현(책임), 박상헌(부책임)

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허준혁	과거경력 : 한국채권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채권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Ryan Coyle	과거경력 : Senior Research Analyst (Consumer), Caerus Global Investors Senior Associate Analyst (Consumer, Retail, Services), Stadia Capital Financial Analyst, Bank of America Securities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Fixed Income Investment Team	Fixed Income Investment Team은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합니다. ※리서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운용을 하므로 팀 단위로 기재하였음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Equity Investment Unit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개인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팀에 관한 사항 - 운용조직 명 : Equity Investment Unit - 운용조직 역할 : Equity Investment Unit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20% 이하(단,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이하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20% 이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2017.03.13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2023.09.19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2017.06.2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017.06.2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017.03.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017.0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020.09.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함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2022.12.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2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구분	지급비율(연 %)						
	수수료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0.3	0.03	0.02	0.02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	-	0.3	-	0.02	0.0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0.3	0.48	0.02	0.0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0.3	0.24	0.02	0.02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3	0.4	0.02	0.02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0.3	0.2	0.02	0.02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3	0.27	0.02	0.0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	-	-	0.3	0.12	0.02	0.02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3	0.11	0.02	0.0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전신탁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대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연금수령 가입자를 위한 사업 및 관련단체에의 지원
2. 기타 수익자를 위한 교육사업 및 그에 준하는 사업에의 지원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3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10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5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90%까지 투자하며,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이하인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며, 일부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8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80% 이하로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9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이하(단,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11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100%이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2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3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100% 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4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20항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이며, MSCI AC WORLD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20%이하	
1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 중 "고배당주"에 최소 8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16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이며, MSCI ACWI SRI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17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8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12~20항을 포함하여 20%이하	이 투자신탁은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2~20항을 포함하여 20% 이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20항을 포함하여 20% 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2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21)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21)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자본수익전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② 각 전략의 모펀드는 투자위험이 상이한 주식, 채권, 부동산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되며 금융시장 상황, 시장전망 및 펀드내 가치변동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략별, 전략내 모펀드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및 투자비중은 아래의 도표와 같으나, 이는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이외에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략별 모투자신탁 구분>

자본수익전략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주식 등 투자 통한 자본수익 추구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추구	헤지 포지션 활용 시장중립 수익 추구	다양한 인컴수익 추구
미래에셋OCIO베스트 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 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글로벌알파 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MSCIAC월드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 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미래에셋글로벌배당 커버드콜액티브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 혼합자산모투자신탁 (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 ESG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 배분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펀드 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 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로저스 Commodity인덱스 특별자산모투자신탁 (일반상품-파생형)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 등급회사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전략별 투자한도>

구분	자본수익전략	기본수익전략 시장중립전략 멀티인컴전략
최초설정일~	20% 이하	100% 이하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은 20% 이하로 투자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는 합산하여 40% 이하로 투자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중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는 60%이상으로 합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BB-이상의 신용 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한하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은 20%이내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2년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③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④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IS종합지수6M~2Y(듀레이션1.0~1.5)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시장지수 (20년 이상 제외)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국내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하고,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도 유연하게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수혜 종목(바스켓)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인덱스헤지(Index Hedge) 전략: 시장 내 성장 섹터/테마에 대한 선별적 포지셔닝과 시장지수 매도전략을 병행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롱온리/숏온리(Long only/Short only) 전략: 장기적으로 가치상승/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에 대해 매수전략 만(Long only)의 포지션 또는 매도전략 만(Short only)의 포지션 보유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추구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등으로 구성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KOSPI 2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지수의 105% 수준인 외가격(OTM)을 행사가로 하는 최근월물 콜옵션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의 만기, 행사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과 리밸런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익월물 옵션 또는 주간 옵션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 200 지수의 추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KOSPI 200 지수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200(70%) + MMI(3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MSCI AC World 지수를 기반으로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동 지수를 구성하는 각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S&P 500, EuroStoxx50, Nikkei225, HSCEI 등)을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③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월간 옵션을 활용하되 시장 상황과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 매도 여부, 수량, 행사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주간 옵션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와 MSCI AC World 지수 간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KOSPI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20% 이내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일부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전략을 구사합니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합니다. ④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도 일부 투자하여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대상자산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③시장상황과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월별 리밸런싱을 실시하나 급격한 시장변동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 전략배분안을 수립하고 경기 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프리미엄 자산 선별과 신규 펀드 발굴등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 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요인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신탁재산의 최대 100% 까지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의 자산 배율 비율은 0 ~ 100%까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으로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해외법인의 CIO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를 통한 Top Down Approach에 의해, 자산 및 국가에 대해 적극적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월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산배분회의와 글로벌 퀀트- 베이스 회의를 통하여, 미래에셋 국내외 운용사의 Analyst / Portfolio manager 들의 지역별 / 섹터별 / 자산별 View 를 공유하고 잠정적인 투자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 Experience-based 리서치를 통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합니다. - 안정적인 우량자산에의 장기투자와 수익률 추구방식의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인사이트펀드만의 독자적인 자산 배분 투자전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MSCI AC World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하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등) 및 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추적오차율= 표준편차(과거 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 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화산하여 산출합니다. ※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 중 "고배당주"에 최소 80% 이상 투자합니다. ※ "고배당주"란? 직전 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 또는 예상배당수익

	률이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입시점에는 "고배당주"였으나 이후 "고배당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 매입된 주식은 "고배당주"로 봅니다. ※ 비교지수: KOSPI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MSCI ACWI SRI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하며 미국, 유럽 등에 상장된 지수관련 ETF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등) 및 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MSCI ACWI SRI Index는 전세계 주식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MSCI ACWI(All Country Word Index)를 유니버스로 하며 MSCI ESG Research에서 제공하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주류·담배·도박·원자력·무기 등 관련 기업을 배제한 종목들 중 각 지역 및 업종내 ESG 등급 BB 이상, ESG 점수 1점 이상의 최상위권 종목 위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지수의 국가 비중 쏠림을 막기 위해 전체 투자 유니버스를 선진국내 4개지역, 신흥국내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내 업종별 ESG 상위 종목을 선정하는데, 선진국이 약 90%, 신흥국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별, 섹터별 유동주식수 반영 시가총액의 상위 25%를 반영하도록 종목을 구성합니다. ※ ESG 평가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오염 및 폐기물 유출, 청정 기술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S: 인적 자원 관리, 제품 안전성, 사회적 활동 등 G: 기업 지배구조, 기업 윤리, 세금 투명성 등 ③이 투자신탁은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수익률 기준) ④ 이 투자신탁은 ESG 지수(비교지수 산출시 ESG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지수)를 고려한 비교지수 추종을 목표로 하는 ESG 집합투자기구이자 인덱스 펀드입니다. ⑤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비교지수 구성 종목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지수방법론에 근거하여 정기 및 수시변경을 진행함으로써 투자목적 달성(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운용합니다. 운용과정에서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별도의 ESG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ESG지수를 산출한 기관(이 투자신탁은 MSCI)에서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기관에서 ESG평가를 실시하는 것, ESG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것이 평가대상 자산의 성과나 비교지수 전체의 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 비교지수명: MSCI ACWI SRI Index - 지수개요: MSCI ACWI SRI Index는 23개의 선진국 및 26개의 신흥국에 상장된 대형주/중형주 중에서 MSCI ESG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된 종목들 중 각 부문 최상위권 종목 위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각 부문별 시가총액 상위 25% 커버리지를 목표로 합니다. MSCI ACWI SRI Index의 국가 및 업종 비중은 대체로 비교지수인 MSCI ACWI 지수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비교지수: MSCI ACWI SRI Index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에 집중하여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② 투자신탁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시 지역, 섹터, 스타일 요인을 비교지수인 MSCI AC World 대비 분산함으로써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시장국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매니저의 종목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알파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ETF 및 패시브전략의 펀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달러표시자산에 대하여 70% 이상 환헤지를 실시하며 그외 통화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RICIⓡ(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RICIⓡ(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이 투자신탁은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투자등급회사채(국제신용평가등급 기준 BBB-이상)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Core α 포트폴리오와 Satellite 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시 당사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AI퀀트모델을 활용합니다. 모델을 통하여 선별되는 종목들을 기초로 운용역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모델을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도록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이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벤트 발생, 시장이 급변동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운용역이 적극 개입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차, 정보의 비대칭, 시장환경 변화, 시장 분위기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법인에 운용을 위탁합니다. ※ 비교지수: Bloomberg US Corporate Total Return KRW Hedged * 100%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퀄리티(Quality)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	0.1	5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대만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611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35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32.0
	6.6	2.5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351.0
주요산업	전자기술, 정보통신, 석유정제, 화학, 섬유공업, 철강, 기계, 시멘트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러시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8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75.0
	-1.4	4.1	4.3	수입 (2024 년 , 십억 US$)	381.0
주요산업	석탄, 원유, 가스 채굴, 광산업, 화학, 금속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88.0
	3	3.2	3.4	수입 (2024 년 , 십억 US$)	377.0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93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675.0
	3	0.7	1.3	수입 (2024 년 , 십억 US$)	582.0
주요산업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캐나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241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87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27.0
	4.2	1.5	1.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33.0
주요산업	석유, 자동차, 금, 천연가스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상기 외 자펀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원/미국달러(USD)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보유자산 중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자펀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원/미국달러(USD)에 대해서 7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대해 90% 이상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 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7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 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품투자 위험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부도등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외의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및 환헤지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전략은 미국달러(USD)와 원화(KRW)간의 환헤지 실행으로 미국달러 이외의 이종통화 표시 외화자산과 미국달러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미국달러(USD)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므로 투자자산이 미국달러 자산인 경우 원화와 미국달러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산이 미국달러 이외의 이종통화 표시 자산인 경우 이종통화와 미국달러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변동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헤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커버드콜과 주식포트폴리오 괴리위험	커버드콜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와 주식포트폴리오는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버드콜 전략으로 의도하고자 했던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자금송환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집중투자에 따른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우선주 및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예정인 배당주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됩니다. 중소형주에의 투자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예정인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경우 우선주의 가격상승폭은 보통주의 가격상승폭에 못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보통주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일부 투자할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들로,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의 채권들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하이일드 채권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예를 들어,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시장이 개장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서 급등한 가격으로 지수 구성종목을 매수하게 되어 음(陰)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 매수하여도 추적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양(陽)의 추적오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정/해지 및 시장 변동성 확대는 추적오차의 원인이 되며 그 금액 또는 변동의 폭이 확대될수록 추적오차의 폭도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드콜 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정 및 비중 결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과거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신경망을 진화시키는 심화학습(Deep Learning) 과정을 통해 결과값을 산출하여 전략을 수행하므로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따른 추적오차 발생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전략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전략이 추적대상 지수와의 추적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롱숏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롱숏 전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숏(매도)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롱(매수)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숏 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 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 전략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차입 매도 비용, 스왑 등의 파생상품 거래 비용 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서는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보접근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투자지역, 자산속성(사무실, 호텔, 개발사업 등), 임대차 계약 등 계약조건의 안정성, 자산 매각 리스크, 목표수익률 및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가치변동이 크지 않고 분배(배당)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 당사의 운용, 리스크관리, 법무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만기까지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기상환(Prepayment)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래 예시와 같이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 예시: 수의상환사채(Callable Bond), 모기지증권 및 구조화된 모기지증권{분리이자(IO;Interest Only), Inverse IO, Floater, Inverse Floater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등
재간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은 일정기간 이전에 기평가된 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매도 관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투자전략을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해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와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업종)에 속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산업(업종)의 경제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거래인지 또는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목적의 거래인지와는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그 특정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후순위채권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후순위 채권(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재산의 발행인의 파산시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보접근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사채 투자위험	파생결합사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환매대금 마련 등의 사유로 파생결합사채를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가격변동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유동성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해외 증권은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특정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이 변경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도 투자하며, 이 경우 외국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간접투자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형투자위험	국내 또는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투자증권, 상품(Commodity)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각종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커버드콜의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은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운용 중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계획됐던 커버드콜 전략의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u>소프트</u>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VaR 값과 투자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97.5% VaR값 9.13%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9.13%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97.5% VaR**는 **9.13%**로 위험등급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은 장기적 배분 계획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한편 중단기적으로 시장대응을 위해 배분 비중을 조정(전술적 배분)하는 것입니다.

전술적 배분 결과 중단기적으로 장기적 배분계획 대비 위험자산 비중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VaR값과 동시에 이러한 투자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위험등급인 **4등급**을 유지하는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펀드 결산시 마다 VaR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9.13%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9.13%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없음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없음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없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없음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함	없음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없음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2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이유	종류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	-	-	-

-오프라인-개인연금	가입자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	-	-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함	-	-	-	-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	-	-	-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2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3	0.03	0.02	0.02	0.37	-	0.37	-	0.52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0.3	-	0.02	0.02	0.34	0.02	0.36	-	0.51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3	0.48	0.02	0.02	0.82	0.02	0.84	-	0.99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3	0.24	0.02	0.02	0.58	0.02	0.6	-	0.75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	0.4	0.02	0.02	0.74	0.02	0.76	-	0.9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3	0.2	0.02	0.02	0.54	0.02	0.56	-	0.71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	0.27	0.02	0.02	0.61	0.02	0.63	-	0.78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3	0.12	0.02	0.02	0.46	0.02	0.48	-	0.63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	0.11	0.02	0.02	0.45	-	0.45	-	0.6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340,346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1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37	77	119	208	4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3	109	167	292	649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86	176	270	472	10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	207	319	556	1237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7	159	245	427	9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3	191	293	511	1137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6	94	145	253	5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1	125	193	337	749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4	132	203	354	7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9	163	251	438	974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7	117	180	314	6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2	149	228	399	887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1	125	193	337	7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6	157	241	421	937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36	75	116	202	4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2	107	164	286	637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9	100	154	269	5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4	132	203	354	787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7년 03월 1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u>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u>(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u>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u>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5)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해외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취득 시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취득 시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	후순위채권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주식관련 사채에의 투자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4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의 권리행사		
10	동일국가발행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국가에서 발행된 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지역(이머징/선진국/한국), 발행기관(국공채/회사채), 등급(투자등급/투기등급), 만기수준(장기/중기/단기) 등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탄력적으로 채권섹터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섹터 자산배분 리밸런싱과 시장 이벤트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의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이 투자신탁의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정기예금금리+150bp] (50%) + KIS종합채권지수(50%)

<정기예금금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단순평균금리
<KIS종합채권지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효과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 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2.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수익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주식관련 사채에의 투자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9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2	지분증권인 주식등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음.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	-

		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10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국내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듀레이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2년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③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④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지수6M~2Y(듀레이션1.0~1.5)

<KIS종합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3.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9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7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채권에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시장지수 (20년 이상 제외)
<KIS 채권종합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상기 지수는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로 구성된 지수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이 90%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주식에 50%미만으로 투자하고,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도 유연하게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 수혜 종목(바스켓)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인덱스헤지(Index Hedge) 전략: 시장 내 성장 섹터/테마에 대한 선별적 포지셔닝과 시장지수 매도전략을 병행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롱온리/숏온리(Long only/Short only) 전략: 장기적으로 가치상승/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에 대해 매수전략 만(Long only)의 포지션 또는 매도전략 만(Short only)의 포지션 보유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추구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 등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적절한 비교가능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KIS국고채 1~2년(80%) + KOSPI(20%)
<KIS국고채1~2년 :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주식지수>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5.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주식 및 채권 등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추구하는, 보다 차별화된 투자 전략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 우수한 투자 역량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 포트폴리오 편입 시, 현행 포트폴리오 대비 수익성/안정성 등 개선 가능할지 등의 여부 판단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분석, 운용역과의 인터뷰 및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실사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투자 역량의 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운용사 및 자문사와의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 사후 실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 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5.08.31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BLACKROCK STR-SYS.AS.PAC.EQ.AB.R(D2)	주식	BlackRock	2017-02-22	(22.1 억원 / 1.59 백만불)
AQR APEX UCITS FUND A1USDACC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AQR	2024-04-30	(11.9 억원 / 0.86 백만불)
LUMYNA-HBK DIVER ST U-BUSDAC	주식, 크레딧, 선진국 국채 등	HBK Capital	2023-10-31	(20.5 억원 / 1.48 백만불)
POLAR GLB ABS RETURN-IUSDACC	전환사채	Polar Capital	2018-12-31	(22.9 억원 / 1.65 백만불)
GAM STAR-CAT BND FND-INACUSD	대재해 채권(Cat Bond)	GAM	2011-11-07	(22.0 억원 / 1.58 백만불)
MAN GLG DYNAMC INCOME-I USD	크레딧	GLG Partners LP	2022-07-01	(18.7 억원 / 1.34 백만불)
JUPITER AM-MER.GL.EQ.AB.RET.(I)ACC	주식	Jupiter	2009-07-01	(13.8 억원 / 1.00 백만불)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3) 투자 대상 펀드 중 역외펀드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기준(UCITS공모펀드 및 이에 준하는 공모펀드)에 따라 유동성 제약, 분산투자 규정, 투자국가 제한, 리스크 통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을 준수하는 펀드로 한정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 UCITS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 유럽연합(EU)의 공모펀드 기준으로 투자방법, 자본의 성격, 투자기관의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정. 이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 등록되면 타국가에 추가 등록하지 않고 다른 EU 국가에서도 판매 가능

※ 피투자펀드 개요 (2025.08.31 기준)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BLACKROCK STR-SYS.AS.PAC.EQ.AB.R(D2)	Luxembourg	CSSF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16.28	Equity Hedged
AQR APEX UCITS FUND A1USDACC	Luxembourg	CSSF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879.00	Multi-Strategy
LUMYNA-HBK DIVER ST U-BUSDAC	Luxembourg	CSSF (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15.14	Multi-Strategy
POLAR GLB ABS RETURN-IUSDACC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6.92	Relative Value
GAM STAR-CAT BND FND-INACUSD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6.22	Credit/Income
MAN GLG DYNAMC INCOME-I USD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3.78	Credit/Income
JUPITER AM-MER.GL.EQ.AB.RET.(I)ACC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0.21	Equity Hedged

각 피투자 펀드에 최대 2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증권의 차입매도 한도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

	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6.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9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하여)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을 주된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등을포함하여)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

		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8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 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종목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총액
2. 배당의 안정성

3. 투자종목의 유동성(거래량)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 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KOSPI 2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지수의 105% 수준인 외가격(OTM)을 행사가로 하는 최근월물 콜옵션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의 만기, 행사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과 리밸런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익월물 옵션 또는 주간 옵션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 200 지수의 추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KOSPI 200 지수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전략이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옵션을 월단위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의 월단위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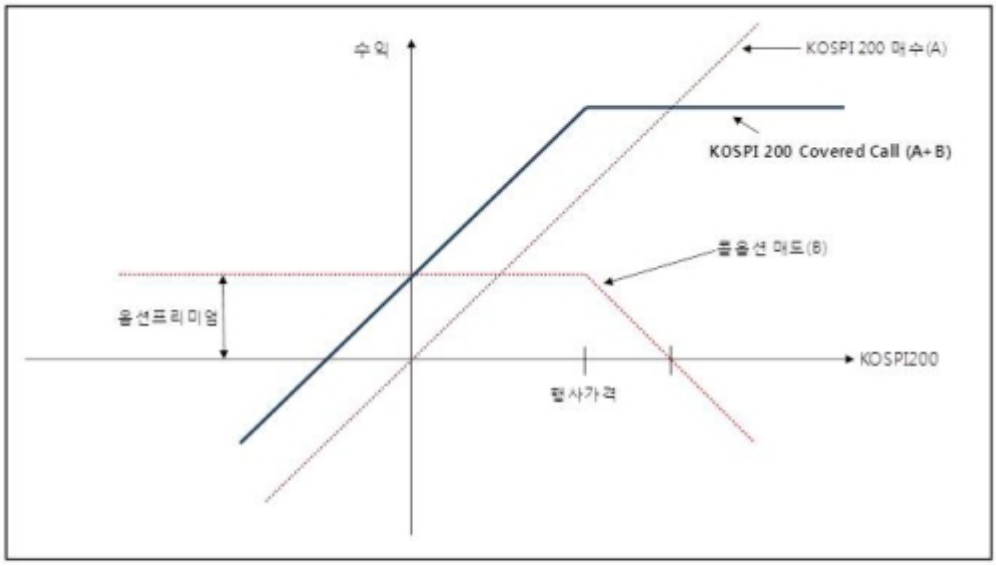

※ 위 그림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KOSPI200 종목으로 구성되는 현물 및 선물 포트폴리오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매도를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종목이 아닌,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구조는 위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KOSPI200(70%) + MMI(30%)

<KOSPI200 :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MMI = 한국채권평가 단기금융지수(Money Market Index) (http://www.koreabp.com)>

-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수익을 추구하며, 일부 국내외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3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50%이하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3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	-

		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10	동일국가발행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국가에서 발행된 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Yield가 양호한 채권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 추구
▶배당수익률이 양호한 주식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의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추구
- 단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베타(β)의 일정수준에서 헤지수행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수익 추구
-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제한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 추구
- 고/저평가 상태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Commodity, 외환 등)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자산별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리츠 등의 경우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시장상황,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합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8.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8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고배당주 선정 기준과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배당주 선정 기준: MSCI AC World 인덱스 구성 종목 중에서 배당의 성장성과 배당성향,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배당주를 선정합니다.
- 위 고배당주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에서 기초자산으로 콜옵션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다만, 펀드 규모가 적정 운용 규모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글로벌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동일비중 원칙으로 투자하되 시장상황 및 국가/섹터 비중을 감안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 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MSCI AC World 지수를 기반으로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동 지수를 구성하는 각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S&P 500, EuroStoxx50, Nikkei225, HSCEI 등)을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전략이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③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월간 옵션을 활용하되 시장 상황과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 매도 여부, 수량, 행사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주간 옵션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와 MSCI AC World 지수 간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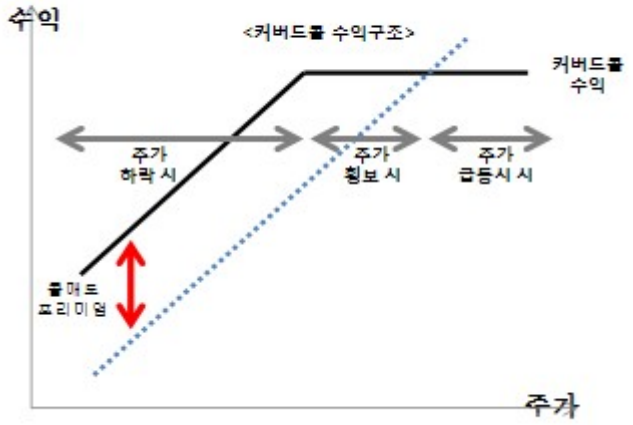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MSCI AC World Index*50%+Call금리*50%
이 투자신탁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반해 현재 시장에는 이를 반영할 적절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위의 지수가 참조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9.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가. 피투자종목의 투자 필요성
전략배분형TDF 및 평생연금TIF가 배분하는 멀티인컴전략 내 하나의 하위펀드로써, 투자전략에 맞는 부동산/인프라 관련 수익증권,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하여 타 선별자산군 대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임대/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피투자종목의 선정 기준
장기적, 안정적 임대/이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우량 부동산/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피투자종목을 선별하여 투자종목의 잠재수익성, 각종 법률/규제 준수여부 및 투자 안정성 등을 사전검토 한 뒤, 당사 내부 부서(컴플라이언스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법무실)에 투자의견을 공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부승인이 이루어진 피투자종목에 한하여 투자 최종 의사결정을 집행하며 이후 자펀드의 AUM 변화, 투자 대상 운용 현황 및 성과, 투자 업종의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정합니다.

다. 펀드 실사
피투자종목에 대한 사전 실사는 상품제안서 및 투자설명서 등 상세 자료의 분석과 피투자종목 담당운용역과의 Q&A를 포함합니다. 투자 이후에도 운용보고서, 공시내역 및 담당 운용역과의 수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투자종목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8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채권	2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2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2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5.09.30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1] (억원/백만불)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미국 애틀랜타 소재 스테이트팜 동부지역 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7-10	약 1,419억원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6호	미국 중부 Amazon 물류시설 포트폴리오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10-28	약 926억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그린디지털인프라㈜ 후순위 대출금, 영산클린에너지(유) 후순위 대출금 등	맥쿼리자산운용	2002-12-12	약 3조 8,621억원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	센터원, 미래에셋플레이스 등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01-09	약 1조 5,016억원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MSCI US REIT Index Price Return을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한 투자신탁재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3-10-08	약 1,419억원
미래에셋맵스리츠	롯데아울렛 광교점, 강남KG타워, 마제스타시티 타워 1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12-12	약 3,042억원
ESR켄달스퀘어리츠	고양 물류센터, 부천 물류센터 등	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20-02-20	약 2조 5,252억원
SK리츠	SK서린빌딩(SK그룹 통합사옥), 클린에너지리츠(SK에너지㈜ 110개 주유소) 지분증권 등	에스케이리츠운용	2021-03-15	약 5조 985억원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아마존 휴스턴 지분증권, 페덱스 탬파 지분증권 등	미래에셋자산운용	2021-05-21	약 3,910억원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롯데마트 이천점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4-19	약 580억원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3호	미래에셋맵스코어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스테이트타워남산)의 수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4-15	약 1,716억원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선순위대출 및 후순위대출	미래에셋자산운용	2018-06-29	약 689억원

1) 총자산 기준

*운용 규모(억원): 순자산(리츠의 경우 자본금) 기준

본 펀드의 피투자종목 투자 편입 비중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동산 및 인프라펀드 비중은 펀드 순자산의 80%를 초과 투자
나. 동일펀드에 자산총액의 50% 이하 투자
다. 동일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지분율)의 50% 이하 투자
라. 동일운용사 펀드에 100% 이하 투자
마. 재간접펀드(펀드에 40% 초과하여 투자가능)에 투자 제한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까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나목만 해당)

		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0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KOSPI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국내 상장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20% 이내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일부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후 보유전략을 구사합니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신규로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당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한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합니다. 투자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대상 탐색
- 주요 대상: 우량 장기 임차인이 확보된 오피스, 물류창고 및 안정적인 이자 흐름이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자

산
- 오피스 자산의 기준: 해당 도시 내 주요 업무지역에 위치한 A급(Class A) 오피스 등 우량 자산
- 물류시설 자산의 기준: 주요 도시 인근에 위치한 우량 임차인의 장기 임차가 확보된 물류 시설
- 대출자산: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산에 대한 선/후순위 대출
- 레버리지 제한: 레버리지 400% 이내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함

나. 투자대상 선정
- 투자제안서, 투자대상에 대한 각종 실사 및 감정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률 및 잠재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전략 상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편입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

다. 모니터링
투자 실행 후 정기보고서 수취, 운용역 및 관계자 인터뷰, 자산 점검 등을 통해 투자대상의 안정성 및 실적 점검, 리스크 관리 실행

④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도 일부 투자하여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2025.09.30 기준)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국내	금융감독원	4.47%	미국 애틀랜타(Atlanta)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여 임대수익과 자본이득 추구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6호	국내	금융감독원	0.49%	미국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투자해 안정적인 분배 지급 및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 추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국내	국토교통부	26.11%	유료도로, 교량, 터널, 항만, 도시가스와 같은 인프라 자산의 시행(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동 법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의 자산에 투자를 통하여 수익 창출.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	국내	국토교통부	8.09%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	국내	금융감독원	19.04%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추구
미래에셋맵스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2.83%	국내 주요 핵심 권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및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6.87%	물류센터 개발 및 운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국내	국토교통부	6.33%	미국, 서부 유럽 주요 국가 등 핵심 지역 소재, 우수한 신용등급의 임차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및 오피스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
미래에셋맵스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국내	금융감독원	7.33%	롯데마트이천점에 투자하였으며 롯데쇼핑과의 책임임차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분배 지급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3호	국내	금융감독원	0.40%	서울 우량 오피스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분배 지급 및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 추구
미래에셋서울춘천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국내	금융감독원	0.29%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의 사업시행법인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선/후순위 대출금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펀드 현금흐름을 창출함. 편입한 선순위 대출금리(4.3%)보다 저금리(3.7%)의 펀드차입금(684억원)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로 펀드 수익률 제고

*투자비중(%): 본건 펀드 순자산 대비 피투자펀드의 평가금액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 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종목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시내역 등 공개된 자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개요, 임대율, 잔여 임대차 기간, 운용 현황, 분배율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 운용사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통화(미국달러(USD), 유로(EURO), 일본엔(JPY))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에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안정적 인컴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증권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별하여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수익증권과 상장지수펀드들을 묶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투자펀드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용이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 운용과 꾸준한 인컴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안정적 인컴을 창출하는 수익증권 및 상장지수펀드를 정성적/정량적 방법으로 스코어링하여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퀀트 및 펀더멘탈 분석을 통한 국가/업종/기업 등의 자산배분안을 반영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혹은 조정합니다. 이후 피투자펀드의 AUM 변화, 투자 업종의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자 유니버스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기본적 편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TF]
최근 30일 평균 일간 거래량 (Volume): 최소 10,000 주 이상
ETF 운용 규모 (AUM): 100 억원 이상
총비용 (TER): 연간 2.0% 이내
추적오차 (NAV TE): 연간 5.0% 이내
거래 용이성: ETF Bid-Ask Spread 및 LP 활동 수준 정도

[수익증권]
규모: AUM 100억 이상
운용 기간: 3년 이상
정량적 분석: 스코어링 모델을 통해 위험조정성과, Hit Ratio, Peer 성과 고려
정성적 분석: 운용사의 운용 스타일, 최근 AUM 증감, 비용 등 고려

다만, 동일 익스포저의 대체가능한 피투자펀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익성과 위험요건을 감안한 내부 협의과정을 통하여 기본요건 미충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피투자펀드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 펀드 실사
피투자펀드들이 공모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인 만큼, 펀드 관련 정보들을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 혹은 Bloomberg를 통해 펀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지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단, 주식 및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5.04.30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TIGER 미국S&P500	주식	미래에셋	2020-08-06	77,668
RISE 국고채10년액티브	채권	KB	2024-05-21	108,093
Invesco Aerospace & Defense ETF	주식	Invesco Capital Management LLC	2005-10-26	130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채권	BlackRock Fund Advisors	2002-07-26	84
iShares MSCI China ETF	주식	BlackRock Fund Advisors	2011-03-31	55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주식	BlackRock Fund Advisors	2012-10-22	57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주식	BlackRock Fund Advisors	2014-06-12	62
JPMorgan BetaBuilders Japan ETF	주식	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2018-06-18	59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주식	SSgA Funds Management Inc	1998-12-22	132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주식	SSgA Funds Management Inc	1998-12-16	50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주식	SSgA Funds Management Inc	1998-12-22	229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주식	SSgA Funds Management Inc	2018-06-18	101
Vanguard FTSE Europe ETF	주식	Vanguard Group Inc/The	2005-03-10	76
Vanguard S&P 500 ETF	주식	Vanguard Group Inc/The	2010-09-09	536
JAN HND BAL-I US ACC	혼합자산	Janus Henderson Investors Europe SA	1999-12-31	58
Pimco GIS Income (IUSD)	채권	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td	2012-11-30	18
NEUBERGER BRM EM DB HC-USDIA	채권	Neuberger Berman Asset Management Ireland Ltd	2013-05-29	16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종류F	채권	미래에셋	2016-04-29	956
BGF Global Multi-Asset Income Fund Class I2 USD	혼합자산	BlackRock Luxembourg SA	2016-11-23	15
BGF-GL GVT BND I2 USD ACC	채권	BlackRock Luxembourg SA	2017-02-22	11
FIRST EAGLE AMUNDI-INC.BUIL(XUC)USD	혼합자산	Amundi Luxembourg SA	2019-02-12	1,498
TIGER 미국S&P500	주식	미래에셋	2020-08-06	20,471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적용제외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대상자산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 채권, 배당 등 인컴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커버드콜 전략 등 프리미엄 수익을 지향하는 집합투자증권
- 기타 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③시장상황과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월별 리밸런싱을 실시하나 급격한 시장변동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2025.04.30 기준)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TIGER 미국S&P500	한국	-	5.80	미국 대형주 500종목(S&P 500 지수) 구성 종목에 패시브로 투자
RISE 국고채10년액티브	한국	-	6.87	잔존만기 10년 내외의 한국 국고채를 액티브 운용으로 편입
Invesco Aerospace & Defense ETF	미국	SEC	0.80	미국 및 글로벌 항공·방위 산업 기업에 집중 투자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SEC	2.03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US Treasury)에 패시브 투자
iShares MSCI China ETF	미국	SEC	1.03	MSCI China 지수 구성 중국 대형·중형주에 투자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미국	SEC	5.04	대형·중형 신흥국 주식 전반에 광범위 분산 투자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미국	SEC	1.86	배당 성장률이 높은 미국 우량주에 포트폴리오 구축
JPMorgan BetaBuilders Japan ETF	미국	SEC	2.82	일본 대형·중형주 대표 지수 추종(패시브)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SEC	0.73	S&P 500 헬스케어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SEC	1.60	S&P 500 금융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SEC	0.72	S&P 500 정보기술(IT)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SEC	2.16	S&P 5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
Vanguard FTSE Europe ETF	미국	SEC	7.11	FTSE Developed Europe 지수 편입 유럽 선진국 주식에 투자
Vanguard S&P 500 ETF	미국	SEC	10.18	S&P 500 지수 추종형, 미국 대형주 전반에 패시브 투자
JAN HND BAL-I US ACC	아일랜드	CBI	7.08	전 세계 주식·채권을 60/40 내외로 혼합하여 자산배분 투자
Pimco GIS Income (IUSD)	아일랜드	CBI	8.77	글로벌 투자등급·하이일드·EM 등 다중 섹터 채권에 유연하게 투자하여 인컴 추구
NEUBERGER BRM EM DB HC-USDIA	아일랜드	CBI	3.37	달러·유로 등 경화 표시 신흥국 국채/국영채권에 투자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종류F	한국	-	2.78	미국 달러표시 우량(투자등급) 회사채에 투자, 원화 환 헤지
BGF Global Multi-Asset Income Fund Class I2 USD	룩셈부르크	CSSF	4.72	글로벌 주식·채권·리츠·프리퍼드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해 안정적 현금흐름 창출
BGF-GL GVT BND I2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2.80	선진국 중심 글로벌 국채에 분산 투자하여 금리·통화 분산 효과 추구
FIRST EAGLE AMUNDI-INC.BUIL(XUC)USD	룩셈부르크	CSSF	14.86	배당주·회사채·전환사채 등 글로벌 인컴 자산을 적극 혼합해 절대수익과 배당 인컴 추구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합니다.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 총수의 20% 이내에서 운용하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은 순자산의 10%이내로 하며 동일 집합 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이내로 하는 등의 법규 사항도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을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이와 같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징상 투자국가의 비중과 주식 및 채권의 투자비중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 가능한 비교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상장지수펀드들의 운용사 홈페이지나 블룸버그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수익률, 위험 지표, 편입 종목, 비중, 시가총액, 국가/섹터별 비중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 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달러(USD),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영국파운드(GBP), 일본엔(JPY), 유로(EUR), 홍콩달러(HK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1.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전략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자산 편입시 대비 효율적으로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정량과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투자아이디어에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 기본적 요건 : 규모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3년이상, ETF 30일 거래량 10,000주 이상(기본요건 미충족시라도 아래 정량, 정상 평가를 통하여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정량평가 : 스코어링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조정성과, Hit Ratio, Peer성과등을 고려합니다.
- 정성평가 : 투자전략 부합도, 운용사 운용스타일을 감안한 피투자펀드 투자전략의 유효성,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도등을 고려합니다.

다. 펀드 실사
투자대상 펀드들이 공모펀드(외국펀드 포함)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히 획득할 수 있어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펀드리서치 기관의 분석 보고서 활용 및 해당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단 주식, 상품, 리츠, 투기등급채권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

			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일반상품・부동산・통화나 주식・채권・일반상품・부동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5.08.31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iShares MSCI World ETF	글로벌주식	BlackRock	2012-01-10	5,605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미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1-04-08	33,743
KIWOOM 국고채 10 년	국내채권	키움자산운용	2011-10-19	5,539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미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3-06-16	22,388
TIGER 미국 S&P500	미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06	91,011
TIGER 미국나스닥 100	미국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0-10-15	55,500
맥쿼리인프라	부동산	맥쿼리자산운용	2002-12-12	16,858
TIGER 골드선물(H)	원자재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4-08	1,127
iShares 0-5 Year TIPS Bond ETF	미국채권	BlackRock	2010-12-01	12,665
iShares 1-5 Year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미국채권	BlackRock	2007-01-05	21,471
TIGER 미국채 10 년선물	미국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18-08-28	1,921
TIGER 미국 MSCI 리츠(합성 H)	미국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3-10-08	1,385
TIGER CD 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국내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24-12-11	4,102
TIGER 일본니케이 225	일본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6-03-29	2,651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주식	State Street	1998-12-16	33,965

※ 상기 피투자펀드는 경기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운용전략 상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및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1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2	계열회사 발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	-

	행증권	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3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 전략배분안을 수립하고 경기 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프리미엄 자산 선별과 신규 펀드 발굴등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 합니다.

② 운용 프로세스

[전략적 자산배분 : 중기자산배분]
고위험자산 비중 70% 이내, ShortFall Risk(3년) 10% 이하의 제약요건 하에 자산별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대비 효용성이 높은 전략 배분안 도출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행합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해 미래에셋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합니다. 미래에셋 자산배분 전략은 장기/중기/단기의 다양한 투자기간 관점으로 구성됩니다. 장기는 5년 이상의 기간이며 중기는 1년 이내의 기간, 단기는 수개월 혹은 수주내의 짧은 기간으로 대상화 합니다. 장기 및 단기적 관점은 포트폴리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며, 중기적 관점은 수익률 창출을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축]
자산배분을 실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민감도 분석, 시뮬레이션(포트폴리오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위험기여도분석, 최적화등)을 통하여 자산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전술적 자산배분]
시장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동적 재조정합니다. 매월 자산배분 View를 반영하여 자산별 새로운 배분 비중을 도출합니다. 시장국면 변화, 편입펀드 이상 징후 점검 등 교체사유 발생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피투자펀드 개요 **(2025.08.31 기준)**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iShares MSCI World ETF	미국	SEC	11.8	글로벌 선진국 대표 지수에 투자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한국	금융감독원	10.1	AI 관련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에 투자
KIWOOM 국고채 10 년	한국	금융감독원	9.2	국내 금리 인하시 수혜가 예상되는 중장기 국채에 투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한국	금융감독원	8.7	상대적으로 성과 안정성이 높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대표 배당주에 투자
TIGER 미국 S&P500	한국	금융감독원	7.9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S&P500 지수에 투자
TIGER 미국나스닥 100	한국	금융감독원	7.8	미국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
맥쿼리인프라	한국	금융감독원	4.9	시장 조정구간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 자산에 투자
TIGER 골드선물(H)	한국	금융감독원	4.8	미국 금리 인하 및 달러 약세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귀금속에 투자
iShares 0-5 Year TIPS Bond ETF	미국	SEC	4.0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가 가능한 미국 물가채에 투자
iShares 1-5 Year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	미국	SEC	3.9	미국의 투자등급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일드 확보
TIGER 미국채 10 년선물	한국	금융감독원	2.9	미국 금리 인하시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중장기 국채에 투자
TIGER 미국 MSCI 리츠(합성 H)	한국	금융감독원	2.4	미국 금리 인하시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고, 이와 함께 꾸준한 배당 수익 확보
TIGER CD 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한국	금융감독원	2.3	예금 수준의 현금성 자산으로, 시장 조정시 예비 유동성 확보
TIGER 일본니케이 225	한국	금융감독원	1.9	일본 주식을 대표하는 니케이 225 지수에 투자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SEC	1.9	시장 조정구간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미국 헬스케어에 투자

※ 상기 피투자펀드, 편입비는 경기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운용전략 상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정보 및 그밖의 정보는 각 운용사별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록자산운용 : www.blackrock.com
스테이트스트리트 : www.ssga.com

※ 비교지수 : 없음

상이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캐나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241.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87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27.0
	4.2	1.5	1.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33.0
주요산업	석유, 자동차, 금, 천연가스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88.0
	3.0	3.2	3.4	수입 (2024 년 , 십억 US$)	377.0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93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675.0
	3.0	0.7	1.3	수입 (2024 년 , 십억 US$)	582.0
주요산업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0	0.1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20% 이하,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 이내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유동성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유출 및 시장 급변 등이 있을 경우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환매연기, 적용기준가 조정(Swing Price)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지정학적 요인 또는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해당 펀드는 규모와 운용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유니버스를 구축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피투자펀드 내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

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펀드의 해당 운용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③ 환위험관리
-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 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2. 미래에셋OCIO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해당 펀드의 투자 전략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배분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설정된 주식형 특히 퇴직연금펀드로 설정된 수익증권을 투자 유니버스로 하여 내부적인 선정프로세스에 따라 피투자 펀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액티브형 펀드 및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용 철학을 보유한 펀드인지, 중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인지
- 패시브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추종 지수의 구성 방법론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 공통적으로 추종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낮은지
-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총 보수가 낮은지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분석, 운용역과의 인터뷰 및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실사뿐 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투자 역량의 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운용사와의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 사후 실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주식관련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4.10.31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규모 (억원)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6-06-27	2,482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8-04-03	19,955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1-03-10	792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1-04-06	780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주식)	국내 주식	교보악사자산운용	2008-12-22	3,646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한화자산운용	2007-06-28	746
KB그로스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KB자산운용	2011-09-28	517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NH-Amundi자산운용	2019-08-14	3,121
NH-Amundi성장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NH-Amundi자산운용	2011-04-20	962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국내 주식	트러스톤자산운용	2010-09-08	254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국내 주식	트러스톤자산운용	2012-09-21	198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4-09-22	1,797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0-12-28	103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10-12-24	65
베어링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국내 주식	베어링자산운용	2014-06-30	2,548

※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50%, 예외 적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10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 총수의 20% 이내에서 운용하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은 순자산의 10%이내로 하며 동일 집합 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이내로 하는 등의 법규 사항도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약관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요인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스타일별 우수 펀드 선정	➢ 투자대상의 규모 및 투자스타일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스타일별 우수 펀드 선정 ➢ 주요 고려요소 - 성과요인(수익률, 위험조정성과 등) - 비성과요인(전문성, 리스크관리 및 투자프로세스 등) ➢ 자체 투자프로세스 및 모형을 바탕으로 정기적 점검 실시
유망스타일 분석 및 비중배분	➢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및 자체 계량모델을 바탕으로 유망 스타일 선정 ➢ 목표 스타일 구현을 위한 스타일별 우수펀드 투자 비중 배분

※피투자펀드 개요 (2024.10.31 기준)

펀드명	설정지국가	투자 비중(%)	주요 투자 대상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	1.2	KRX 반도체 지수 추종, 국내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	9.3	KOSPI200인덱스 추종. 국내 200개 상위 대형주에 분산 투자.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	1.2	MKF 현대차그룹+ FW 지수를 추종, 현대차그룹기업에 분산 투자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	0.5	KOSPI 200 중공업 지수를 추종, 국내 중공업 기업에 분산 투자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주식)	한국	12.2	KOSPI200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 KOSPI200지수 수익률 추종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	12.5	액티브주식형 펀드. JP Asset Management Limited만의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한 투자결정과정에 따라 선별된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관련주식에 주로 투자
KB그로스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한국	16.9	지속 가능 성장주, 이익 성장 가능성, 저평가 기업에 장기투자
NH-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	0.5	기술혁신성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진 부품, 소재, 장비업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
NH-Amundi성장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	4.3	투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중소형주(KOSPI 시가총액 기준 100위 밖의 종목 및 KOSDAQ 종목 포함)에 투자하여 초과 수익 추구
트러스톤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한국	7.9	KOSPI200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추구, 액티브 퀀트 포트폴리오로 BM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함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한국	2.0	고성장 산업 군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한국	4.1	core고배당주, 사업의 안정성이 뛰어난 대형고배당주, 배당수익률이 시장대비 3배 이상인 전통 고배당주 등 다양한 배당주식에 투자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	4.8	펀드재산의 60~70% 수준을 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 복제, 나머지 30~40% 수준을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정량적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각 섹터별/산업별로 대표성, 성장성 및 가치성 등을 갖는 종목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한국	1.8	보유자산, 수익성, 성장잠재력 대비 저평가 된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에 장기적 관점에서 종목 선정 및 투자
베어링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	18.1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고배당 예상 주식에 집중 투자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KOSPI (한국거래소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3.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 및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CIO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의 자산배분전략을 토대로 운용되며, 국내외 우량 주식 및 채권 등의 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가격 상승 및 이자 수익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10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10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10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10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위험평가액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위험평가액기준)10%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투자신탁재산의 최대 100% 까지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② 주식, 채권 등 각 증권의 자산 배율 비율은 0 ~ 100%까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으로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해외법인의 CIO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투자전략위원회를 통한 Top Down Approach에 의해, 자산 및 국가에 대해 적극적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월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산배분회의와 글로벌 퀀트- 베이스 회의를 통하여, 미래에셋 국내외 운용사의 Analyst / Portfolio manager 들의 지역별 / 섹터별 / 자산별 View 를 공유하고 잠정적인 투자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 Experience-based 리서치를 통하여 투자전략을 결정합니다.
- 안정적인 우량자산에의 장기투자와 수익률 추구방식의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인사이트펀드만의 독자적인 자산 배분 투자전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또는 지역 국가 및 섹터에 대하여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 적절한 벤치마크를 선정하기 어렵지만 성과 평가 및 비교 분석의 목적으로 MSCI AC World Index 를 참조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AC World Index 는 전세계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참조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93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675.0
	3.0	0.7	1.3	수입 (2024 년 , 십억 US$)	582.0
주요산업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0	0.1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투자 자산이 특정 통화에 집중되어 투자될 경우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4.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MSCI AC World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	-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MSCI AC World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하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등) 및 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추적오차율=표준편차(과거 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 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World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는 선진국 및 신흥국에 상장된 대형주/중형주로 구성된 지수로 MSCI World Index 및 MSCI Emerging Markets Index를 포괄하는 지수입니다.
MSCI World Index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2017년 4월 28일 현재 23개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SCI Emerging Markets Index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2017년 4월 28일 현재 23개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대상 국가 및 지수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www.msci.com/acw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00년 12월 31일 = 100포인트
-지수정보확인처: www.msci.com/acwi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88.0
	3.0	3.2	3.4	수입 (2024 년 , 십억 US$)	377.0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러시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8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75.0
	-1.4	4.1	4.3	수입 (2024 년 , 십억 US$)	381.0
주요산업	석탄, 원유, 가스 채굴, 광산업, 화학, 금속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상기 외 자펀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외 자펀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고배당주에 80% 이상(주식 평가금액 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고배당주는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임.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6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 7~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이 중 "고배당주"에 최소 80% 이상 투자합니다.
※ "고배당주"란?
직전 회계년도 결산배당금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 또는 예상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고배당주"라 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입시점에는 "고배당주"였으나 이후 "고배당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 매입된 주식은 "고배당주"로 봅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KOSPI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6.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MSCI ACWI SRI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7~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8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MSCI ACWI SRI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 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미국, 유럽 등에 상장된 지수관련 ETF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등) 및 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MSCI ACWI SRI Index는 전세계 주식을 구성종목으로 하는 MSCI ACWI(All Country Word Index)를 유니버스로 하며 MSCI ESG Research에서 제공하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주류·담배·도박·원자력·무기 등 관련 기업을 배제한 종목들 중 각 지역 및 업종내 ESG 등급 BB 이상, ESG 점수 1점 이상의 최상위권 종목 위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지수의 국가 비중 쏠림을 막기 위해 전체 투자 유니버스를 선진국내 4개지역, 신흥국내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내 업종별 ESG 상위 종목을 선정하는데, 선진국이 약 90%, 신흥국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별, 섹터별 유동주식수 반영 시가총액의 상위 25%를 반영하도록 종목을 구성합니다.

※ ESG 평가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오염 및 폐기물 유출, 청정 기술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S: 인적 자원 관리, 제품 안전성, 사회적 활동 등
G: 기업 지배구조, 기업 윤리, 세금 투명성 등

③이 투자신탁은 지수 수익률 추종이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수익률 기준)

④ 이 투자신탁은 ESG 지수(비교지수 산출시 ESG요소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지수)를 고려한 비교지수 추종을 목표로 하는 ESG 집합투자기구이자 인덱스 펀드입니다.

⑤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역의 판단을 배제하고 비교지수 구성 종목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지수방법론에 근거하여 정기 및 수시변경을 진행함으로써 투자목적 달성(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운용합니다. 운용과정에서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별도의 ESG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ESG지수를 산출한 기관(이 투자신탁은 MSCI)에서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ESG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기관에서 ESG평가를 실시하는 것, ESG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것이 평가대상 자산의 성과나 비교지수 전체의 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SRI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비교지수명: MSCI ACWI SRI Index
-산출기관: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개요: MSCI ACWI SRI Index는 23개의 선진국 및 26개의 신흥국에 상장된 대형주/중형주 중에서 MSCI ESG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된 종목들 중 각 부문 최상위권 종목 위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각 부문별 시가총액 상위 25% 커버리지를 목표로 합니다.
MSCI ACWI SRI Index의 국가 및 업종 비중은 대체로 기초지수인 MSCI ACWI 지수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2011년 05월 31일 = 100포인트
-지수정보확인처: www.msci.com/msci-sri-indexes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원/미국달러(USD) 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목표 헤지비율)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형)(H):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국통화 표시 자산에 대해 원/미국달러(USD)간에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이지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와 이종통화간에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7. 미래에셋글로벌펀드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집합투자기구를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다양한 전략의 펀드를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시장상황 대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유니버스 구성
  투자대상 선별 :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글로벌 전략의 펀드 스크리닝
  최소 편입 기준 : 운용전략 기준 AUM 1억달러 이상, 운용기간 5년 이상(다만, 최소편입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분석등을 통해 유니버스에 편입가능)
- 정량평가 : 운용성과, 펀드특성 등 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분석
- 정성평가 : 데이터화되지 않는 투자전략, 프로세스 및 조직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으로 운용성과 지속가능성 판단

다. 피투자펀드 실사
피투자펀드들이 공모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인 만큼, 펀드 관련 정보들을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용사를 통해 수취한 펀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펀드리서치 기관의 분석 보고서 활용 및 현지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

			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5.06.30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JPM INV-JPM GLOBAL SL EQ-IA	글로벌 주식	JPMorgan Asset Management Inc	2010-04-28	10,634
PineBridge Global Focus Equity Fund Y Class	글로벌 주식	PineBridge Investments	1999-01-07	1,768
GMO-QUALITY INVESTMENT- USD	글로벌 주식	GMO LCC	2010-11-10	5,829
Robeco Sus. Global Stars Equities	글로벌 주식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	2019-11-26	2,352
Baillie Gifford WW Long Term Global Growth (BUSD)	글로벌 주식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	2016-08-10	4,919
Loomis Sayles Glb Grwth Eq Fd S/A USD	글로벌 주식	Loomis, Sayles & Company LP	2023-10-27	752
DODGE COX-GL STOCK FD-AUSD	글로벌 주식	Dodge & Cox	2009-12-01	6,406
PGIM JENNSN GLEQ OP-USD AC I	글로벌 주식	Jennison Associates LLC	2017-03-20	1,241
SPARINVEST-GLOBAL VALUE-IUSD	글로벌 주식	Sparinvest S.A.	2001-12-14	1,194
Invesco STOXX Europe 600 Optimised Banks UCITS ETF	유럽 주식	Assenagon Asset Management SA	2009-07-07	363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주식	State Street Investment Management	1998-12-16	49,751
TIGER 차이나반도체 FACTSET	중국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1-08-06	391
TIGER 차이나항셍테크	중국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12-14	10,045
미래에셋글로벌 PE&VC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 F	글로벌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2-06-17	276

*설정일: 편입 피투자펀드 클래스 설정일 기준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에 집중하여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② 투자신탁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시 지역, 섹터, 스타일 요인을 비교지수인 MSCI AC World 대비 분산함으로써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시장국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매니저의 종목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알파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ETF 및 패시브전략의 펀드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표시자산에 대하여 70% 이상 환헤지를 실시하며 그외 통화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③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집합투자증권 선별 및 포트폴리오 구성시까지의 투자프로세스 단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리서치 DB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 편입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유니버스를 구성하며, 코어/성장/가치형으로 펀드 스타일 유형을 구분합니다.

● 선정된 유니버스 펀드들을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 특정 지역/섹터/스타일에 과도하게 편향되지 않으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니저의 판단, 제약 요인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리밸런싱을 통해 향후 다양한 시장국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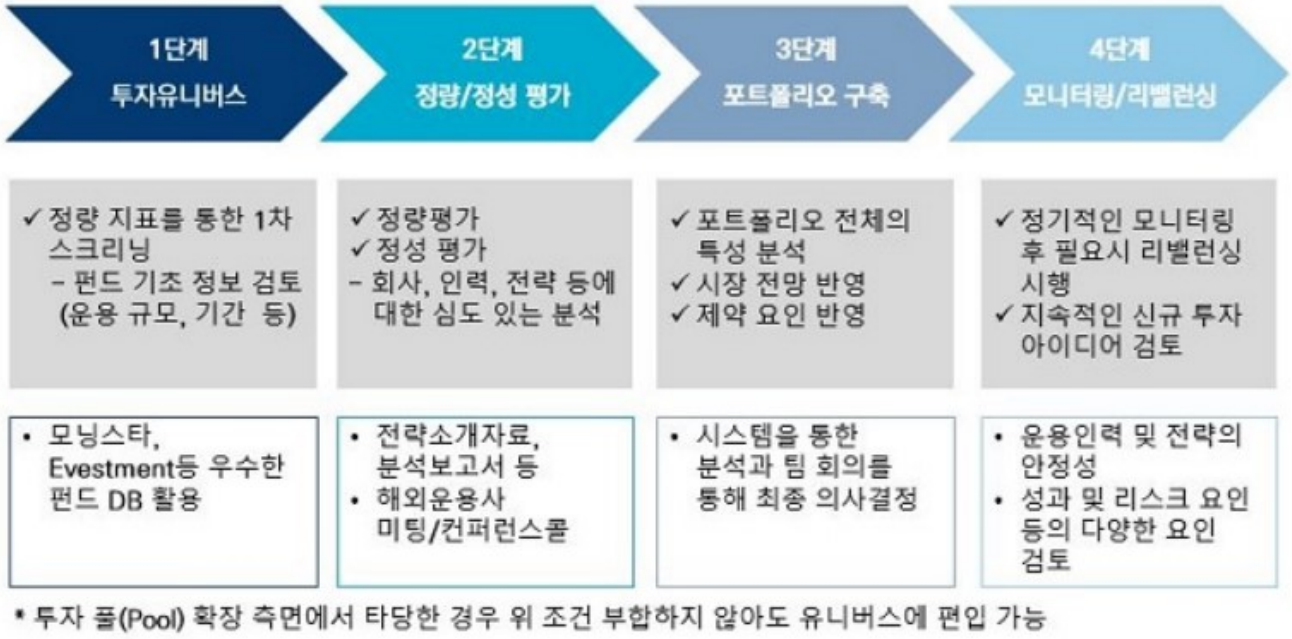

※ 피투자펀드 개요 (2025.06.30 기준)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 감독기관	투자 비중(%)	주요 투자전략
JPM INV-JPM GLOBAL SL EQ-IA	Luxembourg	CSSF	13.6	펀더멘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주식에 선별 투자
PineBridge Global Focus Equity Fund Y Class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2.5	기업의 성장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독자적 분류 체계를 활용한 글로벌 주식 압축 투자
GMO-QUALITY INVESTMENT- USD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2.4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갖춘 글로벌 퀄리티 종목에 장기 투자
Robeco Sus. Global Stars Equities	Luxembourg	CSSF	11.9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상향식 분석방법으로 자본 수익률과 현금흐름이 우수한 글로벌 주식 투자
Baillie Gifford WW Long Term Global Growth (BUSD)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9.4	장기 투자 관점에서 단기 시장 소음을 배제하고 개별 종목 중심의 심도 깊은 리서치를 통해 고확신 아이디어에 집중 투자
Loomis Sayles Glb Grwth Eq Fd S/A USD	Luxembourg	CSSF	6.8	7 단계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통해 질적 경쟁력, 성장 지속성, 밸류에이션을 통합 분석하여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
DODGE COX-GL STOCK FD-AUSD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6.4	저평가된 글로벌 우량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 장기적 성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한 밸류에이션 기회를 포착
PGIM JENNSN GLEQ OP-USD AC I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4.3	혁신성과 진입장벽, 장기 수요 성장성을 갖춘 글로벌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
SPARINVEST-GLOBAL VALUE-IUSD	Luxembourg	CSSF	3.0	보수적인 밸류에이션 접근을 기반으로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하고, 밸류 프리미엄과 종목 선택으로 초과수익 추구
Invesco STOXX Europe 600 Optimised Banks UCITS ETF	Ireland	Central bank of Ireland	1.9	유럽 금리 인상 사이클, 정책 및 이익 모멘텀의 수혜가 예상되는 유럽 은행주에 투자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United States	SEC	1.9	미국 금융산업 규제완화로 인한 정책 및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미국 금융 섹터에 투자
TIGER 차이나반도체 FACTSET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1.7	중국 반도체 내수 시장과 정부 반도체 육성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반도체 산업 투자
TIGER 차이나항셍테크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1.7	높은 장기 성장성이 예상되는 중국 대표 혁신기술산업에 투자
미래에셋글로벌 PE&VC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 F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0.8	PE, VC 등 대체 펀드 운용 및 직접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글로벌 상장 PE 운용사 및 벤처 투자사에 투자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는 상기 각 운용사별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prosectus)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3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합니다. 피투자펀드의 수익증권 발행 총수의 20% 이내(상장지수펀드의 경우 50% 이내)에서 운용하고,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은 순자산의 10%이내로 하며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 이내로 하는 등의 법규 사항도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World Index

<MSCI 지수 :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16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71.0
	2.6	0.9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074.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228.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032.0
	5.0	0.1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884.0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20% 이하,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 이내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Factsheet등의 운용보고서를 운용사로부터 수취합니다. 상장지수펀드들의 경우는 운용사 홈페이지나 블룸버그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수익률, 위험 지표, Top 10 종목의 비중, 국가/섹터별 비중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펀드는 대부분 자산을 해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의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해외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글로벌주식형 펀드와 유사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으며 유동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유출 및 시장 급변 등이 있을 경우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환매연기, 적용기준가 조정(Swing Price)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특성상 로컬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의 지정학적 요인 또는 금융시스템불안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해당 펀드는 규모와 운용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유니버스를 구축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편입 집합투자기구별 최대 투자 비중 한도를 정해 특정 펀드에 과한 쏠림을 방지하고, 편입 펀드의 총 자산 대비 투자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피투자펀드 내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펀드의 해당 운용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원/미국달러(USD)간에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원/미국달러(USD)에 대해서 7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

	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8.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4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5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일반상품·채권·통화나 일반상품·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6	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포함)
9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10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1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위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8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RICIⓡ(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RICIⓡ(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Rogers 지수: Beeland Interests, Inc.가 작성하여 발표>
- 실물자산(또는 "상품"이라고도 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
- RICI는 상품의 국제적인 수출입 동향 및 주요 상품소비국가의 내수환경 등에 관한 지표를 기초로 국제무역 및 상거래상 기여도가 큰 종목 중 국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인덱스에 편입합니다.
(타 인덱스와 달리 상품의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 실물자산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가. 지수명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Excess Return
나. 개시일 : 1998년 8월 1일(기준지수 1000)
다. 구성종목수 : 38종목(2025년 10월 17일 현재)

라. 지수정보확인처 : Bloomberg(RICIGLER:IND)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보유자산 중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대해 90% 이상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 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9.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144A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채권을 의미함)을 포함한다. 다만, 미국에서 달러화(USD)로 발행된 회사채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2	후순위채권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단, 은행 및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3	자산유동화증권	2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단,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취득시 AA-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것에 한함)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단,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사채, 미국 투자등급회사채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하지 아니함)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50% 이하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주4)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

	자(예외)	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투자등급회사채(국제신용평가등급 기준 BBB-이상)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개요]
Bloomberg US Corporate Total Return Index는 2023년 6월말 기준 약 1,000여개 기업이 발행한 약 7,600여개의 회사채가 편입되며 약 6.8조달러에 달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신용등급은 글로벌 기준 투자등급 채권(BBB-이상)으로 구성됩니다.
YTM 5.48(환헤지시 3.71), 듀레이션 7.21, 평균신용등급 A-(2023년 6월말 기준)
※ YTM(Yield To Maturity)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 듀레이션(Duration)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Core α 포트폴리오와 Satellite 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시 당사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AI퀀트모델을 활용합니다. 모델을 통하여 선별되는 종목들을 기초로 운용역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모델을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도록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이 학습하지 못하였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벤트 발생, 시장이 급변동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운용역이 적극 개입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차, 정보의 비대칭, 시장환경 변화, 시장 분위기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법인에 운용을 위탁합니다.

[Core α 포트폴리오] AI퀀트모델에 의해 선별되는 종목으로 구성되며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이 투자(약 90%내외)되는 핵심 포트폴리오입니다.
Core α 포트폴리오는 퀀트팩터모델에서 선별된 종목 45% 내외, 인공지능모델을 통해 선별된 종목 45%내외의 비중으로 구성합니다.
1) 퀀트팩터모델 : 팩터검증을 위해 투자유니버스를 섹터와 만기, 신용등급에 따라 그룹핑하고 그룹내 팩터검증과정을 통해 우수한 종목을 선별해 내는 모델
※ 팩터(Factor)란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Factor)를 말합니다.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actor)는 종목의 사이즈, 밸류, 퀄리티, 변동성, 모멘텀등 다양합니다. 퀀트팩터모델은 팩터(가치, 모멘텀, 안정성, 성장성등)에 맞춰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해내는 모델입니다.
2) 인공지능모델(딥러닝 모델) :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종목 선택 모델을 훈련하여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해내는 모델입니다. 딥러닝을 위해 학습에 투입되는 데이터와 변수를 고르는 단계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딥러닝이란 컴퓨터(AI)가 인공신경망 구조를 활용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Satellite α 포트폴리오] 채권의 고유한 특성(듀레이션, 커브, 크레딧 방향성, 변동성등)을 활용하여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크게 국면판단, 듀레이션, 크레딧방향성, 변동성에 대한 전략으로 구분합니다. 국면판단은 현재의 국면 즉 경기/신용/정책사이클상의 위치를 파악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듀레이션전략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 가치 및 금리 수준 대비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딧방향성 전략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크레딧스프레드에 대한 적정가치를 파악하여 투자합니다. 이러한 알파전략 간의 배분은 별도의 인공지능 모델(Top Mind α)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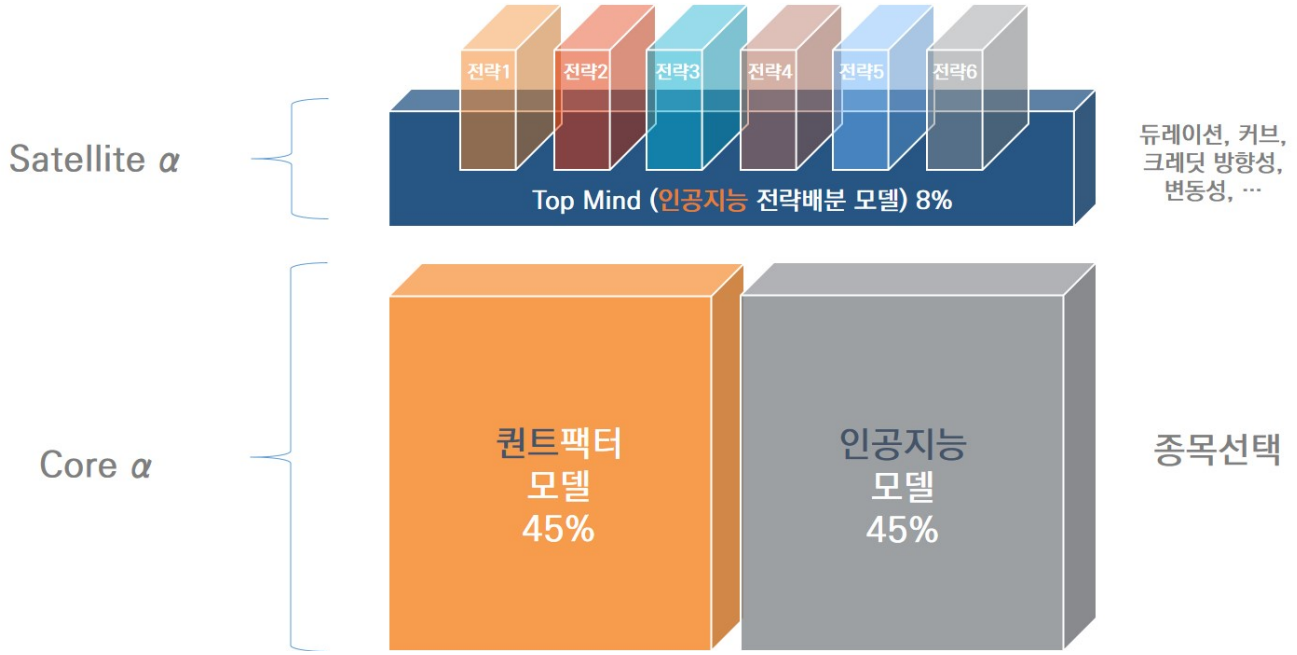

※ 비교지수 : Bloomberg US Corporate Total Return KRW Hedged * 100%

<Bloomberg지수: Bloomberg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미국 투자등급회사채로 구성된 채권관련 지수>
미국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및 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신용등급(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편입 종목에 대한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

여 거래량이 현저히 적거나,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달리 구성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 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7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 할 예정이지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20. 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퀄리티(Quality) 주식에 투자합니다. MSCI의 정의에 따르면, 퀄리티(Quality) 주식이라 함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Debt to Equity)가 낮으며, 이익 변동성(Earnings Variability)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적은 자본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이 뛰어나며,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은 매크로 상황 등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② 퀄리티(Quality) 속성에 해당되는 주식들 가운데 경제적해자 및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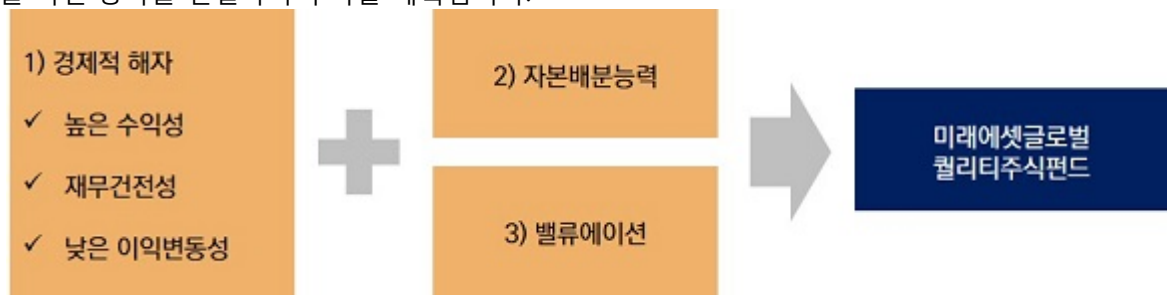

*경제적해자: 경제적해자란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높은 진입장벽과 확고한 구조적 경쟁우위를 가지는 기업으로 다음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합니다.
i)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당 제품의 가치도 커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른 사람의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을 향유할 만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ii) 무형자산: 특허, 라이선스 이외에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에 따른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
iii) 전환비용: 높은 비용 발생으로 한번 구입한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
iv) 원가경쟁력: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영업이익률이 높은 구조를 가지는 기업
*자본배분능력: 기업의 잉여현금을 기존 사업에 재투자 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의 투자 등을 통해 높은 이익성장을 지속하거나,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기업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지 않는 기업
③ 투자 유니버스 및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까지의 투자프로세스 단계의 순서 및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델포트폴리오(MP) 후보군 구축 -> 스크리닝을 통한 종목 압축
2단계: 투자 종목 분석 -> 펀더멘털 분석 진행
3단계: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 철저한 밸류에이션을 통한 종목 선정 및 비중 결정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지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AC World Index
<MSCI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대만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611.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35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32.0
	6.6	2.5	1.2	수입 (2024 년 , 십억 US$)	351.0
주요산업	전자기술, 정보통신, 석유정제, 화학, 섬유공업, 철강, 기계, 시멘트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9,18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191.0
	2.5	2.9	2.8	수입 (2024 년 , 십억 US$)	4,108.0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및 관리]
해당 펀드는 글로벌 거래소 상장 종목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와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들에 투자하여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편입 종목에 대한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여 편입 당시 선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편입종목 교체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환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유동성으로 일부 원화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헷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운용역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7기(23.03.13 ~ 24.03.12)	적정
8기(24.03.13 ~ 25.03.12)	적정
9기(25.03.13 ~ 25.09.12)(반기)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9기(25.09.12)	8기(25.03.12)	7기(24.03.12)
운용자산	507,000	484,563	544,438
증권	498,305	476,169	536,354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794	694	1,584
기타운용자산	7,900	7,700	6,500
기타자산	976	952	5,102
자산총계	507,977	485,516	549,540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4,778	8,827	13,637
부채총계	4,778	8,827	13,637
원본	416,562	419,794	490,472
수익조정금	-1,584	-	-
이익잉여금	56,893	56,893	45,430
자본총계	503,198	476,688	535,903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9기(25.03.13 ~ 25.09.12)	8기(24.03.13 ~ 25.03.12)	7기(23.03.13 ~ 24.03.12)
운용수익	32,867	29,941	39,062
이자수익	99	336	337
배당수익	2,634	7,232	6,628
매매/평가차익(손)	30,133	22,372	32,095
기타수익	-	-	-
운용비용	1,540	3,252	3,783
관련회사보수	1,317	2,781	3,234
매매수수료	6	13	15
기타비용	216	457	533
당기순이익	31,327	26,688	35,278
매매회전율	34	54	58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9기(25.09.12)	8기(25.03.12)	7기(24.03.12)
운용자산	507,000	484,563	544,438
증권	498,305	476,169	536,354
주식	-	-	-
ETF	-	-	-
채권	-	-	-
매입어음	-	-	-
수익증권	498,305	476,169	536,354
외화유가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파생상품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ELS	-	-	-
ELW	-	-	-
DLS	-	-	-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	-
현금 및 예치금	794	694	1,584
예금	794	694	1,584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	-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7,900	7,700	6,500
콜론	7,900	7,700	6,500
환매조건부채권	-	-	-
기타자산	976	952	5,102
미수이자	1	2	2
미수배당금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975	949	5,100
선물정산미수입금	-	-	-
선납(선급)원천세	-	-	-
기타	-	-	-
자산총계	507,977	485,516	549,540
운용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	-
미지급주식	-	-	-
미지급채권	-	-	-
미지급ETF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기타부채	4,778	8,827	13,637
미지급보수	650	634	716
미지급해지금	1,478	1,245	6,936
미지급이익분배금	-	4,512	4,004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2,649	2,435	1,980
부채총계	4,778	8,827	13,637
원본	416,562	419,794	490,472
수익조정금	-1,584	-	-
이익잉여금	56,893	56,893	45,430
당기순이익	31,327	-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503,198	476,688	535,903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9기(25.03.13 ~ 25.09.12)	8기(24.03.13 ~ 25.03.12)	7기(23.03.13 ~ 24.03.12)
운용수익	32,867	29,941	39,062
투자수익	2,734	7,568	6,966
이자수익	99	336	337
배당수익	2,634	7,232	6,628
기타수익	-	-	-
매매이익	32,474	31,577	46,502
주식매매이익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32,474	31,577	46,502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2,341	9,204	14,406
주식매매손실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2,341	9,204	14,406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1,540	3,252	3,783
위탁보수비	623	1,287	1,445
판매보수비	596	1,292	1,562
수탁보수비	48	100	113
사무관리보수비	48	100	113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6	13	15
기타비용	216	457	533
당기순이익	31,327	26,688	35,278
비용	3,881	12,457	18,190
수익	35,208	39,146	53,468
천좌당 순이익(원)	65	54	5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3.03.13~' 24.03.12	-	-	-	-	-	-	-	-	-
'24.03.13~' 25.03.12	-	-	-	-	-	-	-	-	-
'25.03.13~' 25.09.12	-	-	-	-	-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3.09.19~' 24.03.12	200	200	-	-	-	-	200	200	-
'24.03.13~' 25.03.12	200	208	2	2	-	-	202	210	2
'25.03.13~' 25.09.12	202	219	931	1,017	28	29	1,105	1,207	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3.03.13~' 24.03.12	92,722	95,869	2,857	2,988	26,818	28,280	68,761	70,576	958
'24.03.13~' 25.03.12	68,761	75,285	2,157	2,446	17,973	20,465	52,945	57,266	382
'25.03.13~' 25.09.12	52,945	60,483	823	949	5,373	6,275	48,396	55,156	451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3.03.13~' 24.03.12	69,940	72,184	3,248	3,400	21,858	23,062	51,330	52,522	898
'24.03.13~' 25.03.12	51,330	56,092	4,438	5,030	14,684	16,643	41,083	44,478	413
'25.03.13~' 25.09.12	41,083	46,832	1,698	1,963	5,213	6,051	37,568	42,745	461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3.13~'24.03.12	233,628	245,062	12,780	13,670	66,625	71,405	179,783	187,326	2,647
'24.03.13~'25.03.12	179,783	199,678	9,661	11,164	54,859	62,784	134,585	148,059	1,163
'25.03.13~'25.09.12	134,585	155,932	4,371	5,127	14,504	17,035	124,452	144,025	1,299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3.13~'24.03.12	193,276	197,805	16,361	17,102	67,057	70,102	142,580	144,805	2,543
'24.03.13~'25.03.12	142,580	154,501	22,427	25,328	44,846	50,362	120,160	129,467	1,196
'25.03.13~'25.09.12	120,160	135,818	14,424	16,607	15,815	18,229	118,769	134,196	1,398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3.13~'24.03.12	1,814	1,796	737	748	518	524	2,033	2,020	-
'24.03.13~'25.03.12	2,033	2,108	1,423	1,542	775	832	2,682	2,818	37
'25.03.13~'25.09.12	2,682	2,901	639	708	554	612	2,766	2,997	27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3.13~'24.03.12	1,190	1,189	48,899	50,452	4,306	4,464	45,783	47,177	-
'24.03.13~'25.03.12	45,783	48,028	50,102	54,431	27,751	30,249	68,134	72,211	807
'25.03.13~'25.09.12	68,134	74,499	25,755	28,654	10,386	11,612	83,503	91,541	87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4.12.01~ 25.11.30	23.12.01~ 25.11.30	22.12.01~ 25.11.30	20.12.01~ 25.11.30	설정일~ 25.11.30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9.64	10.27	-	-	9.43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23	9.83	7.11	4.08	4.10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9.43	10.04	7.33	4.30	4.33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28	9.89	7.17	4.15	4.37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46	10.08	7.36	4.34	4.38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37	9.99	7.28	4.26	4.69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9.52	10.14	7.25	-	7.25
투자신탁	10.01	10.63	7.92	4.89	5.17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4.76	4.47	4.35	4.76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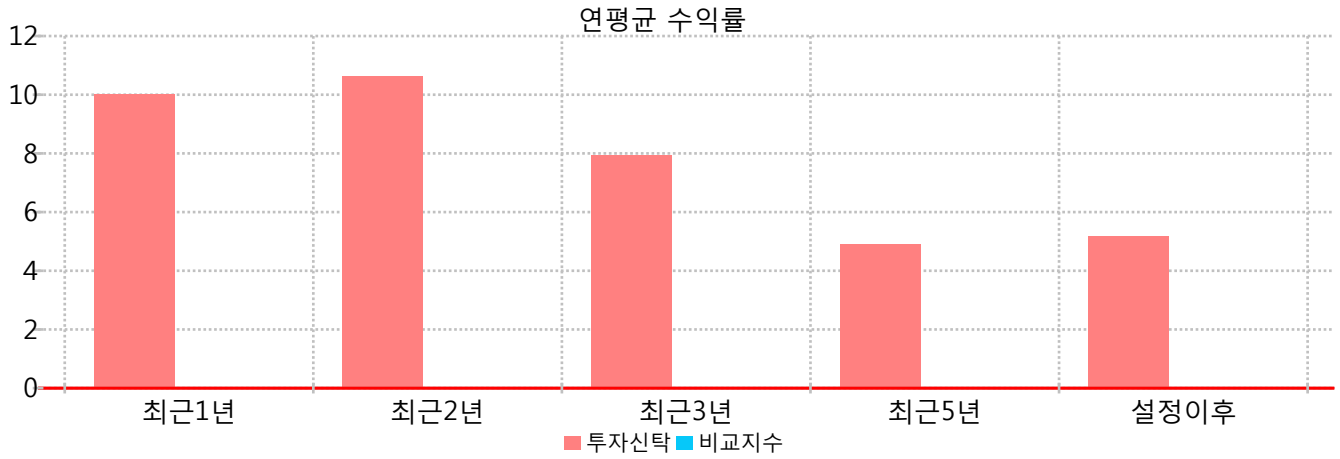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4.12.01~ 25.11.30	23.12.01~ 24.11.30	22.12.01~ 23.11.30	21.12.01~ 22.11.30	20.12.01~ 21.11.30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9.64	10.92	-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23	10.47	1.85	-8.88	9.05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9.43	10.69	2.09	-8.64	9.3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28	10.54	1.93	-8.80	9.13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9.46	10.73	2.13	-8.61	9.34
종류C-P2K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37	10.65	2.06	-8.67	9.26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9.52	10.79	1.61	-	-
투자신탁	10.01	11.29	2.67	-8.10	9.92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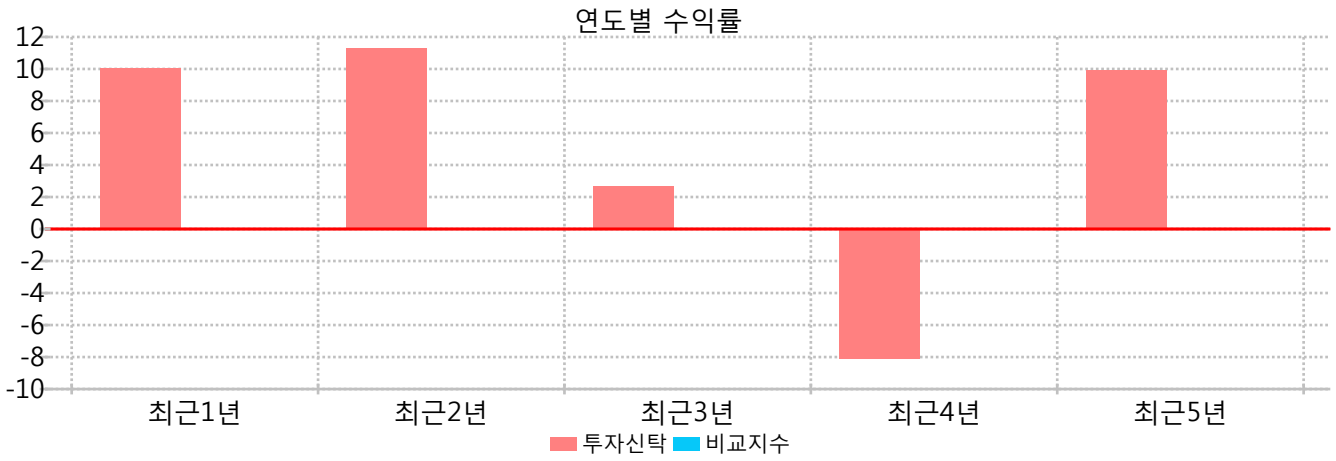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5.09.3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ARS(아르헨티나)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AUD(호주)	614	1,095	-	6,927	-	-	36	-	-	225	-	8,896
	0.12	0.21	-	1.35	-	-	0.01	-	-	0.04	-	1.73
BRL(브라질)	-	2	-	6,873	-	-	-	-	-	-	-	6,875
	-	-	-	1.34	-	-	-	-	-	-	-	1.34
CAD(캐나다)	756	159	-	6,873	-	-	14	-	-	1	-	7,803
	0.15	0.03	-	1.34	-	-	-	-	-	-	-	1.52
CHF(스위스)	457	-	-	6,873	-	-	-	-	-	-	-	7,330
	0.09	-	-	1.34	-	-	-	-	-	-	-	1.43
CNH(CNH(유가증권))	1,829	-	-	6,873	-	-	-	-	-	-	-	8,701
	0.36	-	-	1.34	-	-	-	-	-	-	-	1.7
CNY(중국)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COP(콜롬비아)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CZK(체코)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DKK(덴마크)	95	-	-	6,873	-	-	-	-	-	-	-	6,967
	0.02	-	-	1.34	-	-	-	-	-	-	-	1.36
EGP(이집트)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EUR(유럽연합)	3,544	2,266	-	7,035	-	-	10	-	-	329	-	13,184
	0.69	0.44	-	1.37	-	-	-	-	-	0.06	-	2.57
GBP(영국)	1,455	224	-	7,159	-	-	16	-	-	120	-	8,974
	0.28	0.04	-	1.4	-	-	-	-	-	0.02	-	1.75
HKD(홍콩)	2,028	-	-	7,031	-	-	7	-	-	269	-	9,335
	0.4	-	-	1.37	-	-	-	-	-	0.05	-	1.82
HUF(헝가리)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IDR(인도네시아)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ILS(이스라엘)	8	-	-	6,873	-	-	-	-	-	-	-	6,880
	-	-	-	1.34	-	-	-	-	-	-	-	1.34
INR(인디아)	-	520	-	6,873	-	-	-	-	-	-	-	7,392
	-	0.1	-	1.34	-	-	-	-	-	-	-	1.44
ISK(아이슬란드)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JPY(일본)	2,781	371	-	6,884	-	-	13	-	-	98	-	10,146
	0.54	0.07	-	1.34	-	-	-	-	-	0.02	-	1.98
KRW(한국)	26,832	61,215	1,454	29,300	-	-	-	-	-	10,261	-	129,062
	5.23	11.93	0.28	5.71	-	-	-	-	-	2	-	25.15
MXN(멕시코)	-	687	-	6,873	-	-	-	-	-	-	-	7,559
	-	0.13	-	1.34	-	-	-	-	-	-	-	1.47
MYR(말레이지아)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NGN(나이지리아)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NOK(노르웨이)	21	-	-	6,873	-	-	-	-	-	-	-	6,894
	-	-	-	1.34	-	-	-	-	-	-	-	1.34
NZD(뉴질랜드)	2	-	-	6,873	-	-	-	-	-	-	-	6,875
	-	-	-	1.34	-	-	-	-	-	-	-	1.34
PEN(페루)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PHP(필리핀)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RUB(러시아)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SEK(스웨덴)	59	-	-	6,873	-	-	-	-	-	-	-	6,931
	0.01	-	-	1.34	-	-	-	-	-	-	-	1.35
SGD(싱가포르)	24	-	-	6,873	-	-	20	-	-	-	-	6,917
	-	-	-	1.34	-	-	-	-	-	-	-	1.35
THB(태국)	-	-	-	6,873	-	-	-	-	-	-	-	6,872
	-	-	-	1.34	-	-	-	-	-	-	-	1.34
TRY(터키)	-	914	-	6,873	-	-	-	-	-	76	-	7,863
	-	0.18	-	1.34	-	-	-	-	-	0.01	-	1.53
TWD(대만)	149	-	-	6,873	-	-	-	-	-	-	-	7,021
	0.03	-	-	1.34	-	-	-	-	-	-	-	1.37
USD(미국)	33,349	40,124	-	48,440	-	-	2,768	-	-	3,611	-	128,291
	6.5	7.82	-	9.44	-	-	0.54	-	-	0.7	-	25
ZAR(남아프리카공화국)	-	98	-	6,873	-	-	-	-	-	-	-	6,970
	-	0.02	-	1.34	-	-	-	-	-	-	-	1.36
합계	74,003	107,675	1,454	312,093	-	-	2,884	-	-	14,990	-	513,074
	14.42	20.97	0.28	60.84	-	-	0.55	-	-	2.9	-	100

자산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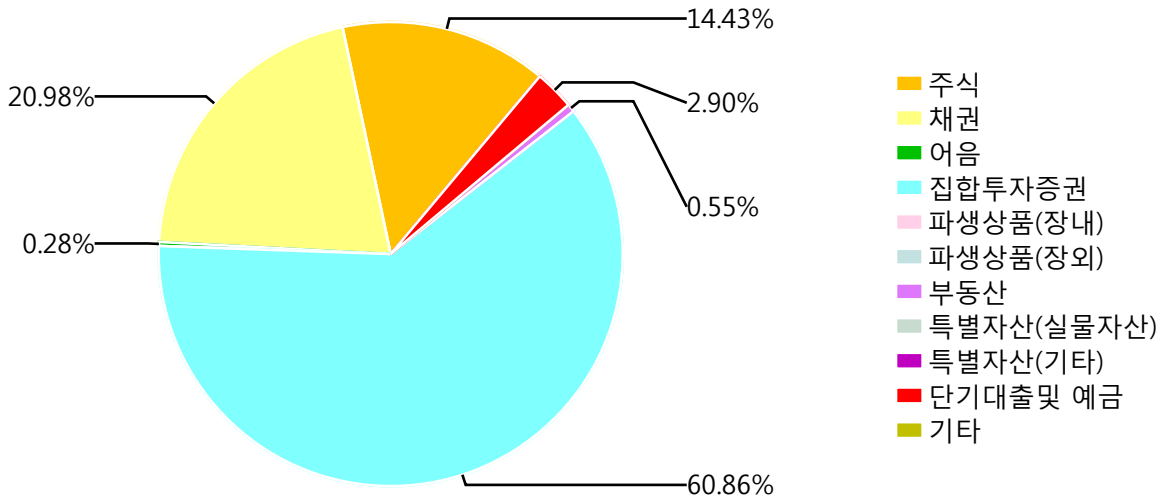
14.43%
2.90%
0.55%
20.98%
0.28%
60.86%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장내)
파생상품(장외)
부동산
특별자산(실물자산)
특별자산(기타)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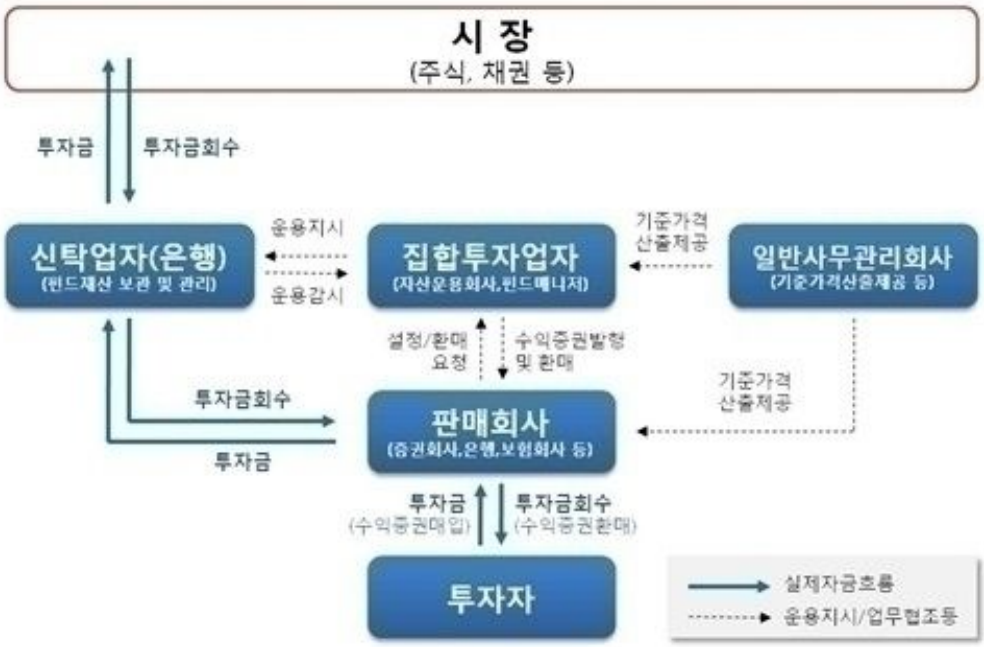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3조 8,749억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4.12.31	2023.12.31	항 목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708	2,640	영업수익	423,329	391,365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23,681	185,435	영업비용	282,107	296,169
유가증권	4,647,770	4,175,022	영업이익	141,222	95,19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6,887	21,437	지분법손익	385,105	425,153
기타자산	6,560	5,950	영업외수익	10,250	1,506
자산총계	4,937,606	4,390,484	영업외비용	2,916	2,132
예수부채	20,201	89,015	법인세차감전이익	533,661	519,724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619,314	619,171	당기순이익	450,732	446,764
기타부채	423,101	312,140			
부채총합	1,062,616	1,020,32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246,633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80,811	7,977			
이익잉여금	3,479,685	3,047,687			
자본총계	3,874,990	3,370,158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74,024	4,393	5,380	45,986	129,783	6,905	23,496	10,913	49,517	10,102	10,358	934	-	242,00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시행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02-2073-7114
홈페이지	www.kbstar.com
연혁	1963년 2월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
홈페이지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등록 집합투자기구: 미래에셋AI퀀트미국투자등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투자주체: 미래에셋자산운용
- 투자목적: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 집행
- 투자금액: 2억원
-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 투자금 회수계획: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주2)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3) 투자금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하되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하며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미만이거나, 설정 후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